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안 번호	435
----------	-----

제출년월일 : 2025. 5. 31.

제출자 : 평창군수

I. 제안이유

2024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 주요내용

1. 결산개요 :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 “별첨”

2. 세입 · 세출결산

가. 총괄

(단위 : 원, %)

구 분	예산액 (가)	전년도이월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세입결산액 (라)	비율 (라)/(다)	세출결산액 (마)	비율 (마)/(다)	잉여금 (바)=(라)-(마)	비율 (바)/(다)
합 계	799,999,314,000	173,081,407,650	953,080,721,650	993,843,217,475	104.3	712,555,462,176	74.8	281,287,755,299	29.5
일반회계	663,290,815,000	151,907,260,010	815,198,075,010	854,281,749,829	104.8	622,711,030,502	76.4	231,570,719,327	28.4
특별회계	116,708,499,000	21,174,147,640	137,882,646,640	139,561,467,646	101.2	89,844,431,674	65.2	49,717,035,972	36.1

나.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액 (가)	전년도이월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정수결정액 (라)	실제수납액 (마)	정리 보류액(바)	미수납액 (사)=(라)-(마)-(바)	비율(%) (마)/(다) (마)/(라)
합 계	799,999,314,000	173,081,407,650	953,080,721,650	1,001,298,659,688	993,843,217,475	763,781,933	6,691,660,280	104.3 99.3
일반회계	663,290,815,000	151,907,260,010	815,198,075,010	860,900,797,614	854,281,749,829	763,781,933	5,855,265,852	104.8 99.2
특별회계	116,708,499,000	21,174,147,640	137,882,646,640	140,397,862,074	139,561,467,646	0	836,394,428	101.2 99.4

다.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 $(가)+(나)$	지출액 (라)	다음연도이월액 (마)	보조금반납액 (바)	집행잔액 (사)= $(다)-(라)-(마)-(바)$
합 계	720,565,609,000	191,832,190,868	912,397,799,868	707,924,213,733	173,081,407,650	7,096,497,570	24,295,680,915
일반회계	646,541,243,000	164,228,381,739	810,769,624,739	628,168,022,444	151,907,260,010	7,015,234,454	23,679,107,831
특별회계	74,024,366,000	27,603,809,129	101,628,175,129	79,756,191,289	21,174,147,640	81,263,116	616,573,084

라. 결산상 임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결산상임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임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81,287,755,299	208,029,962,289	74,789,529,610	21,135,198,903	112,105,233,776	3,769,642,336	69,488,150,674
일반회계	231,570,719,327	160,955,509,399	70,612,683,440	21,095,797,383	69,247,028,576	3,647,249,190	66,967,960,738
특별회계	49,717,035,972	47,074,452,890	4,176,846,170	39,401,520	42,858,205,200	122,393,146	2,520,189,936

※ 자금없는 이월 : 일반회계(사고이월 176,931,000원)

마.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10건 192,100,000원
- 예산이체 : 200건 70,250,473,840원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

(관광정책과 → 문화예술과, 건설과 → 안전교통과, 정책담당관 폐지)

바.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8,580,000,000	181,000,000	181,000,000	0	0

3. 기금결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 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6,659,652,420	△1,149,992,886	2,881,334,674	4,031,327,560	25,509,659,534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99,499,080	△2,320,670,324	2,454,676	2,323,125,000	78,828,756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176,271,183	354,777,269	354,777,269	0	11,531,048,452
평창군자활기금	499,631,735	15,380,250	15,380,250	0	515,011,985
평평창군고향사랑기금	406,259,350	483,395,160	483,395,160	0	889,654,51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661,610,426	△427,666,591	616,109,409	1,043,776,000	2,233,943,835
평창군외광고발전기금	206,073,527	11,627,830	29,540,300	17,912,470	217,701,357
평창군체육진흥기금	1,304,523,486	△88,576,610	529,424,200	618,000,810	1,215,946,876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1,180,953	△5,409,850	23,103,430	28,513,280	115,771,103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7,884,602,680	827,149,980	827,149,980	0	8,711,752,660

4. 재무제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합 계	3,961,457,985,876	41,296,298,297	3,920,161,687,579	527,550,383,627	697,836,618,238	(170,286,234,611)
일반회계	3,508,152,705,021	40,504,115,476	3,467,648,589,545	506,150,659,324	630,497,961,468	(124,347,302,144)
기타특별회계	301,906,766,419	785,885,273	301,120,881,146	32,051,284,472	88,868,920,975	(56,817,636,503)
기금회계	27,230,609,777	1,550,000	27,229,059,777	1,677,860,713	2,971,632,387	(1,293,771,674)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11,538,005,659	4,747,548	311,533,258,111	20,963,596,118	8,791,120,408	12,172,475,710
내부거래	(187,370,101,000)	0	(187,370,101,000)	(33,293,017,000)	(33,293,017,000)	0

5. 성과보고서

(단위 : 개, 원)

실국별	전략 목표수	성과목표					결산액
		정책사업목표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합 계	8	77	155	25	91	39	689,807,580,107
행정담당관	1	4	7	1	4	2	73,041,650,049
기획재정국	1	21	36	3	26	7	130,953,933,740
관광경제국	1	17	38	8	21	9	101,718,564,379
도시안전국	1	20	41	5	27	9	270,600,765,342
의회사무과	1	1	2	2	0	0	977,135,513
보건의료원	1	5	5	2	1	2	14,201,512,636
농업기술센터	1	7	19	4	8	7	78,174,827,219
상하수도사업소	1	2	7	0	4	3	14,589,890,020
읍면사무소	0	0	0	0	0	0	5,540,892,229
정책담당관(폐지)	0	0	0	0	0	0	8,408,980

※ 결산액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